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560

발의연월일: 2024. 1. 15.

발 의 자: 안상훈·박덕흠·조정훈

이성권 • 우재준 • 백종헌

박성훈 · 서범수 · 이종욱

박상웅 • 박수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자활급여는 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외에 일반수급자, 차상위자 중 자활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참여할 수 있음.

오늘날 경계선 지능인, 자립준비청년 등 민간에서 자력으로 근로 기회를 얻는 것이 어렵고 복지 필요도가 높은 대상자가 적지 않음. 그러나 이들은 현행법 상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들을 위한 별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한계가 있음.

이에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초과 100분의 120 이하인 자도 자활 참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역 자활센터가 그러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안 제7조제5항 신설 등).

또한, 최근 자활 참여자가 고령화되고, 근로능력 미약자 및 복합적문제(가족, 정신건강, 부채 등)를 가진 참여자 증가하고 있음. 이에 참여자 상담 등을 통한 사회적·정서적 자립 지원, 복지 지원 등 참여자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고, 정부는 2025년 모든 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례관리사를 확대 배치하고 사례관리를 센터 중점기능으로 확립할 예정임.

이에 자활급여의 내용과 자활복지개발원 및 지역자활센터 업무에 상담 및 사례관리를 추가하여 자활 관련 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8호 신설 등).

법률 제 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근로기회의 제공 등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초과 100분의 120 이하인 사람에 대하여 제1항제7호에 따른 급 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기준 및 절 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자활에 필요한 상담 및 사례관리

제15조의3제1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15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자활사례관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 운영 및 지원

제16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사업"을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6. 제15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상담 및 사례관리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급여의 종류) ① ~ ③ (생	제7조(급여의 종류) ① ~ ③ (현
략)	행과 같음)
<u> <신 설></u>	⑤ 근로기회의 제공 등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자로
	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
	득의 100분의 50 초과 100분의
	<u>120</u> 이하인 사람에 대하여 제1
	항제7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자활급여) ① 자활급여는	제15조(자활급여) ①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 설></u>	8. 자활에 필요한 상담 및 사례
	<u>관리</u>
<u>8.</u> (생 략)	<u>9.</u> (현행 제8호와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의3(자활복지개발원의 업	제15조의3(자활복지개발원의 업

무) ① 자활복지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8. (생 략) <신 설>

9. · 10. (생략)

②・③ (생략)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① 보장 지 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능력・경험 등을고려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u><신 설></u>

부) ①
1. ~ 8. (현행과 같음)
9. 제15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자
활사례관리 활성화를 위한 사
업 운영 및 지원
<u>10.</u> ・ <u>11.</u> (현행 제9호 및 제10
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세16조(지역자활센터 등) ①
1. ~ 5. (현행과 같음)
6. 제15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자
활에 필요한 상담 및 사례관
<u>리</u>